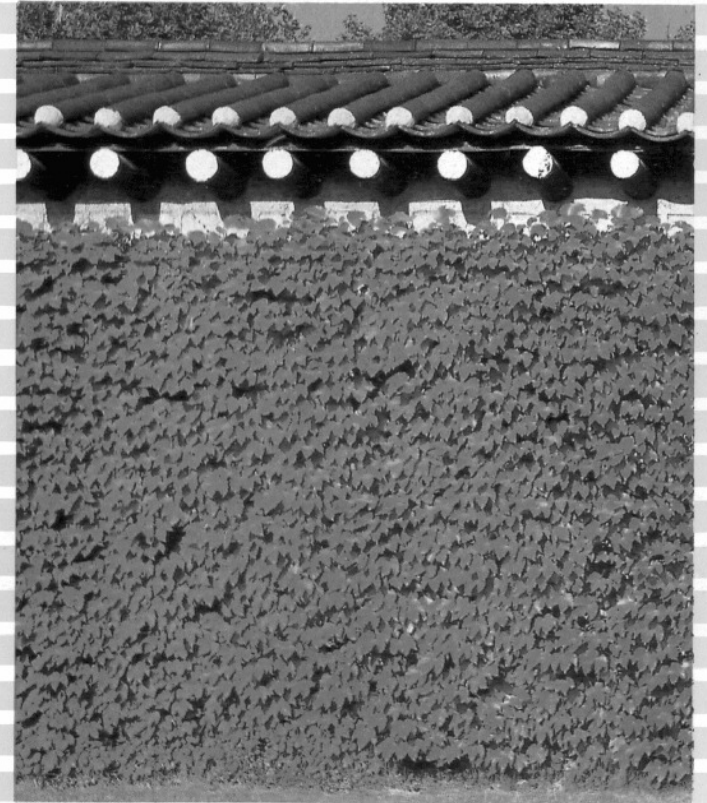


약관

21세기종합안전보험 : 교보상개 2213-142 ('90. 12. 3) 신고후 판매
재 해 입 원 특 약 : 동생수리 88-79 ('88. 8. 25) 신고

21세기 종합안전보험



인 사 말 씀

이 땅에 교육보험의 씨를 뿌린 저희 대한교육보험을 항상 성원해 주시는 계약자 여러분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한교육보험은 계약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 이제는 계약자 이익배당을 실시하는 국내에서 가장 내실있고 세계에서든 앞서가는 생명보험회사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저희 대한교육보험은 이러한 튼튼한 내실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계약자 여러분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배당으로 되돌려드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가꾸고 지켜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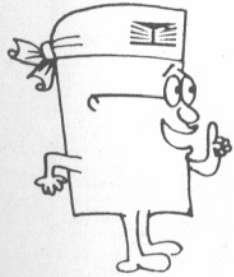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목

차

●유의사항	2
●주요 보험용어 설명	3
●상품구성 및 지급예시	4
●약관 주요내용 설명	6
1. 계약의 효력	6
2. 계약의 무효	6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4. 가입자가 회사에 계약전 알릴 의무	7
5. 주소 변경 통지	8
6.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계약의 효력	8
7. 보험금 등 지급절차	9
8. 계약내용의 변경	9
●생명보험과 세제안내	10
●21세기 종합안전보험약관	12
●재해입원특약약관	31
●신체부위의 설명도	36



본 약관은 보험계약자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한 제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꼭 읽어보시고,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서상의 주소, 성명 등 기재사항은 본인이 적절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건강상태나 직업 등 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3. 생명보험은 은행예금과 달라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하시면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험계약에 관한 상담은 본사의 소비자보호부나 가까운 총국 또는 영업국, 영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 험 약 관 : 계약의 성립부터 만기시까지의 계약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통 보험약관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계약과특약 : 보험약관중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내용을 주계약이라 하며,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주계약과 다른 특별한 약속을 기재하여 주계약에 부가하는 계약내용을 특약이라 함.
- 보 험 증 권 : 계약의 성립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계약증서
- 보 험 계 약 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는 사람
- (주)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생사 등이 보험의 대상이 됨.
- 보 험 수 익 자 : 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 보 험 기 간 : 보험회사가 보장을 행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 됨.
- 책 임 개 시 일 : 계약상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
- 계 약 일 : 통상계약 체결시의 책임개시일과 같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날을 계약일로 함.
- 계 약 해 당 일 : 계약후의 보험기간중에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계약일의(월 단위의 경우에는 매월) 해당일
- 책 임 준 비 금 : 장래의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에서 적립되는 적립금
- 해 약 환 급 금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상품구성 및 지급예시

1. 상품구성

이 보험은 21세기 종합안전보험(1)+재해입원특약(1:선택부가)으로 조립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개 별 취 급		단 체 취 급	
			남	여	남	여
순수보장형	개인계약	10년만기	2950-10	2951-10	2960-10	2961-10
		20년만기	2950-20	2951-20	2960-20	2961-20
	부부계약	10년만기	2952-10	2953-10	2962-10	2963-10
		20년만기	2952-20	2953-20	2962-20	2963-20
만기환급형	개인계약	10년만기	2954-10	2955-10	2964-10	2965-10
		20년만기	2954-20	2955-20	2964-20	2965-20
	부부계약	10년만기	2956-10	2957-10	2966-10	2967-10
		20년만기	2956-20	2957-20	2966-20	296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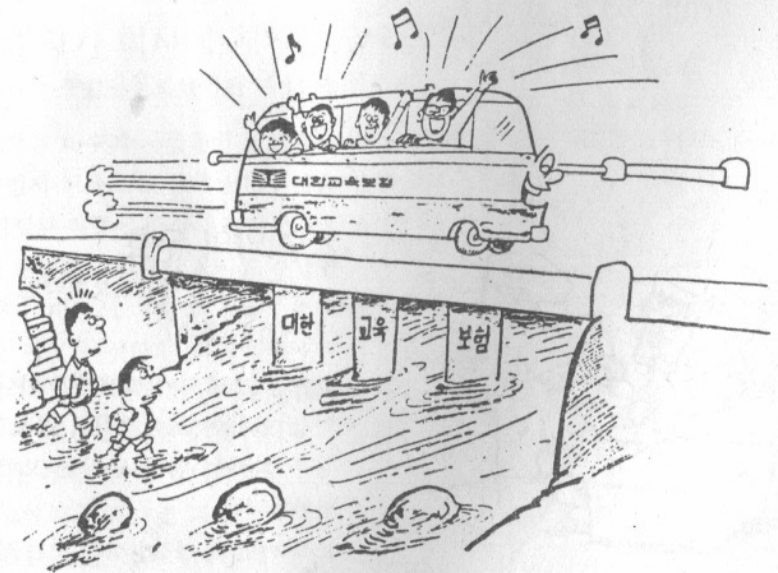
2. 보험금 지급예시

주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재해입원특약 1,000만원(선택부가) 기준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주피보험자)
사 망 시	일반사망·고도의 장해	500만원
	재해사망	2,500만원
	교통재해사망	1 억 원
교 통 재 해 장 해 시	1급장해	1 억 원(일시금 5,000만원+500만원씩 10년간 지급)
	2급장해	6,000만원(일시금 3,500만원+500만원씩 5년간 지급)
	3급장해	4,000만원(일시금 2,500만원+500만원씩 3년간 지급)
	4급장해	일시금 1,500만원
	5급장해	일시금 750만원
	6급장해	일시금 500만원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교 통 재 해 이 외 의 재 해 장 해 시	1급장해	5,000만원(일시금 2,500만원+250만원씩 10년간 지급)
	2급장해	3,000만원(일시금 1,750만원+250만원씩 5년간 지급)
	3급장해	2,000만원(일시금 1,250만원+250만원씩 3년간 지급)
	4급장해	일시금 750만원
	5급장해	일시금 375만원
	6급장해	일시금 250만원
재 해 입 원 시		3일 초과 1일당 1만원
만 기 생 존 시 (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재해입원특약보험료 제외)

※ 부부계약의 경우 배우자는 주피보험자의 50%(단, 재해입원시는 주피보험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만기시 만기환급금은 만기환급형에 가입하여 주피보험자 만기 생존시에만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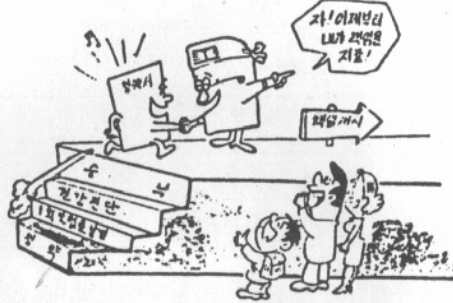


주요내용 설명

1. 계약의 효력

(21세기 종합안전보험약관 제3조 참조)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부터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승낙을 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승낙전의 경우에도 재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격 피보험체 및 진단이 끝난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집니다.(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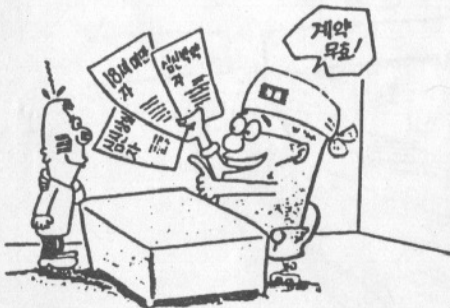


2. 계약의 무효

(21세기 종합안전보험약관 제6조 참조)

법률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18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등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1세기 종합안전보험약관 제9조 참조)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용 및 선량한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 2년 이내 피보험자의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나.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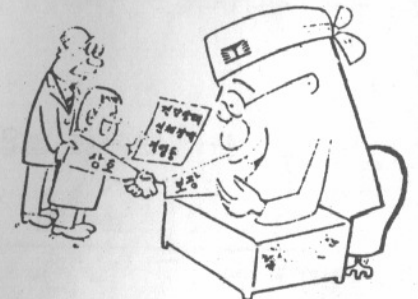
4. 가입자가 회사에 계약전 알릴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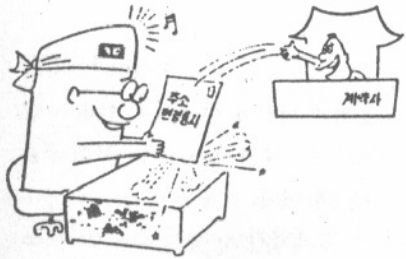
(21세기 종합안전보험약관 제11조 참조)

생명보험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서 상호보장하여 서로 돕는 제도입니다.

보험가입시 처음부터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이나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계약하면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피보험자의 과거의 병력이나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관하여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주소 변경통지

(21세기 종합안전보험약관 제 14조 참조)
제 14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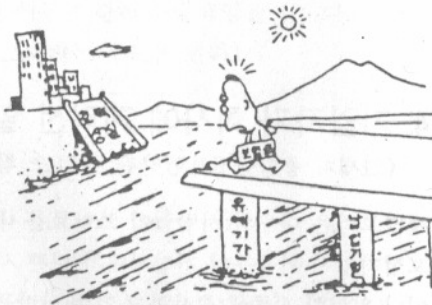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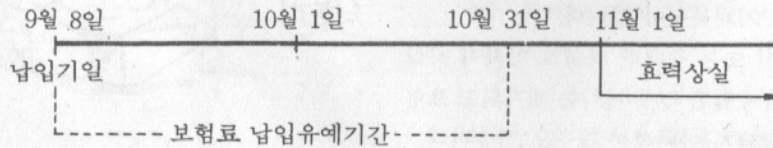
(21세기 종합안전보험약관 제 15조 참조)

계약자는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늦어도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유예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계약의 효력상실 상태에서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도해



7. 보험금 등 지급절차

(21세기 종합안전보험약관 제 18조 참조)



가. 회사는 수익자 또는 계약자로부터 소정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립
고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
니다.

나.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급사유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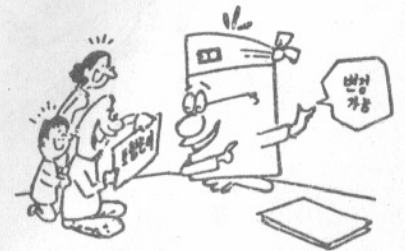
수령인	지급사유	구비서류 보험증권 과최종납 입영수증	주 민 등 록 증	도 장	해 당 진 단 서	비 고
보험금	만기·생존시	○	○	○		회사통장 발행시는 증권 대신 통장 사용
	입원·장해·기타	○	○	○ (인감)	○	① 사망시 사망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수익자	사 망 시	○	○	○ (인감)	○	② 재해시 재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 경찰서장 확인서 추가)
계약자	해 약 시	○	○	○		
	대 출 시		○	○		
대리인	(1) 상기 해당서류, 수익자(단, 해약, 계약자대출은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사용 용도 명시) 및 위임장(인감도장)을 필히 지참 (2) 대리수령인의 도장 및 주민등록증					

※ 회사는 상기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8. 계약내용의 변경

(21세기 종합안전보험약관 제 20조 참조)

보험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계약자
의 소득수준, 가족수, 기호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수익자 등의 계약내용
을 변경할 수 있으며, 2년이상 유지된 대상계
약에 대하여는 타보험으로의 보험 종목 변경
도 가능합니다.



생명보험에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1. 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중 소득공제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24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어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의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면세

상속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700만원까지 상속세의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세기 종합안전보험 약관

목 차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13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특실】	13
제 3 조	【계약의 효력】	13
제 3 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13
제 3 조의 3	【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의 효력】	14
제 4 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14
제 5 조	【대표자의 지정】	14
제 6 조	【계약의 무효】	14
제 7 조	【보험금 지급사유】	14
제 8 조	【배당금의 지급】	15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제 10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16
제 11 조	【가입자가 회사에 계약전 알릴 의무】	16
제 11 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16
제 12 조	【보험료의 납입】	16
제 13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6
제 14 조	【주소변경통지】	16
제 15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17
제 16 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7
제 17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7
제 18 조	【보험금등의 지급】	17
제 19 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18
제 20 조	【계약내용의 변경】	18
제 20 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18
제 21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8
제 22 조	【계약자대출】	19
제 22 조의 2	【손해배상의 처리】	19
제 23 조	【분쟁의 조정】	19
제 23 조의 2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19
제 24 조	【관할법원】	19
제 25 조	【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19
제 26 조	【준거법】	19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청약철회(請約撤回)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의 통지로서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특실】

-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일 때에는 주피보험자, 부부계약일 때에는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로 하고, 종피보험자의 범위는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 1항에 해당되는 배우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이하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를 포함합니다), 별표 4에서 정한 1급장해(이하 “고도의 장해(高度의 障害)”라 합니다) 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별표 4에서 정하는 2급 내지 3급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계약의 경우에 이후 제 1항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 ③ 계약의 체결후에 제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배우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 3 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보험료를 받은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 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로 소급(溯及)하여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 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 현재,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피보험체(適格被保險體)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立證)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피보험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진단이 끝난 여부에 관계없이 제 1회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책임(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집니다.
- ④ 주피보험자가 사망, 고도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2급 내지 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 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계약자의 계약체결의사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서 사용한 회사(대리점, 영업소, 영업국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 기재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중요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조의 3 【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의 효력】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 ① 회사가 제 1회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이하 “정기예금금리”라 합니다)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 ② 무진단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청약시에 제 1회보험료를 납입하고 청약일 또는 제 1회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청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반환지급기일을 경과하는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정기예금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6 조 【계약의 무효】

-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② 제 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7 조 【보험금 지급 사유】

-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익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중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고도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2. 보험기간중 별표 3에 정한 “대상이 되는 불의의 교통사고”(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별표 4에서 정하는 1급 내지 6급장애(이하 “장애”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
3. 보험기간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1급 내지 6급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4. 만기환급형 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② 제 1항 제 2호 내지 제 3호에 의하여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두 종류이상의 장애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애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급여금만을 드립니다.
- ③ 제 2항에 규정한 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애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이미 장애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애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급여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 ④ 제 2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 3항에 규정하는 장애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에 대하여는 이미 장애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2. 제 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또는 장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애
- ⑤ 제 1항 제 2호 내지 제 3호의 경우 장애급여금의 지급한도는 소득보장금 포함, 통산하여 교통재해장애의 경우 주피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의 600%, 종피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의 300%로 하고 교통재해이외의 재해장애의 경우 주피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의 300%, 종피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의 150%로 합니다.
- ⑥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경우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장애상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8 조 【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을 드립니다.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 급여금 또는 소득보장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애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 급여금 또는 소득보장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애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제 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11조 【가입자가 회사에 계약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 ③ 제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11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는 등의 사기의사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

- ①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 7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

- ② 제 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 ①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재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 1항을 적용합니다.

제16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① 계약이 효력상실(効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부활을 청약하는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제 1조 제 2항, 제 3조, 제 4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7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소득보장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재해를 증명하는 서류(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의 경우)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급여금 및 소득보장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8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 17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소득보장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급여금 또는 소득보장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급여금, 소득보장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험금, 급여금, 소득보장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제9조 제2항, 제11조 제3항,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3항, 제21조)은 이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제19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 또는 사망보험금(고도의 장해급여금 또는 고도의 장해보험금은 제외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8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 금리로 부리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미지급기간이 1년미만인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해당기간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0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연령이 18세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제22조 【계약자 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2조의 2 【손해배상의 처리】

회사는 보험모집과정에서 모집인 및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처리를 사업방법서, 보험업법, 기타관계법률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보험감독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3조의 2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보험보증기금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보험료 납부 명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일정금액의 범위(약관에서 정한 금액,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 등을 해드립니다.

제26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가. 개인계약

① 순수보장형 (보험가입금액 10만, 40세가입, 20년만기, 전기월납기준)

구 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119	0	68	0
1년	1,428	0	816	0
3년	4,284	0	2,448	0
5년	7,140	865	4,080	95
10년	14,280	2,256	8,160	928
20년	28,560	0	16,320	0

② 만기환급형

구 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214	0	139	0
1년	2,568	0	1,668	0
3년	7,704	1,914	5,004	539
5년	12,840	6,253	8,340	3,853
10년	25,680	16,831	16,680	11,244
20년	51,360	51,360	33,360	33,360

나. 부부계약

① 순수보장형 (보험가입금액 10만, 40세가입, 20년만기, 전기월납기준)

구 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136	0	115	0
1년	1,632	0	1,380	0
3년	4,896	0	4,140	0
5년	8,160	1,039	6,900	683
10년	16,320	2,559	13,800	1,902
20년	32,640	0	27,600	0

② 만기환급형

구 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240	0	221	0
1년	2,880	0	2,652	0
3년	8,640	2,425	7,956	2,273
5년	14,400	7,156	13,260	6,899
10년	28,800	18,960	26,520	18,273
20년	57,600	57,600	53,040	53,040

(별표 1)

보 험 금 지 급 기 준 표

1. 보험기간중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고도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 일반사망급여금으로 주피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의 50%, 종피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2. 보험기간중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1급 내지 6급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 :

지급사유	금 여 명	지급액(보험가입금액 기준)	
		주 피 보 험 자	종 피 보 험 자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	250 %	125 %
1급장해시	재해고도장해보험금	250 %	125 %
	소득보장금	25%씩 10년간 지급	12.5%씩 10년간 지급
2급장해시	장해급여금	175 %	87.5 %
	소득보장금	25%씩 5년간 지급	12.5%씩 5년간 지급
3급장해시	장해급여금	125 %	62.5 %
	소득보장금	25%씩 3년간 지급	12.5%씩 3년간 지급
4급장해시	장해급여금	75 %	37.5 %
5급장해시	장해급여금	37.5 %	18.75 %
6급장해시	장해급여금	25 %	12.5 %

3. 보험기간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1급 내지 6급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

지급사유	금 여 명	지급액(보험가입금액 기준)	
		주 피 보 험 자	종 피 보 험 자
사망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000 %	500 %
1급장해시	교통재해고도장해보험금	500 %	250 %
	소득보장금	50%씩 10년간 지급	25%씩 10년간 지급
2급장해시	장해급여금	350 %	175 %
	소득보장금	50%씩 5년간 지급	25%씩 5년간 지급
3급장해시	장해급여금	250 %	125 %
	소득보장금	50%씩 3년간 지급	25%씩 3년간 지급
4급장해시	장해급여금	150 %	75 %
5급장해시	장해급여금	75 %	37.5 %
6급장해시	장해급여금	50 %	25 %

단,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소득보장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만기환급형 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 : 만기환급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지급

(별표 2)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 30 호, 1979. 1. 1 시행)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철도사고	E 800~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E 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 820~E 825
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E 826~E 829
5. 수상교통기관사고	E 830~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E 840~E 845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케이블카 곤돌라 등)	E 846~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E 850~E 858
1)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2) 질병의 진단치료의 목적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E 860~E 869
1) 세제, 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약물질 접촉에 의한 피부염	
2) 살모넬라성(Salmonella성) 식중독	
3) 세균성(포도구균성, Botulinus성),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4) 알레르기성, 식이성(음식물에 의한)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10. 불의의 추락	E 880~E 888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E 899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E 900~E 909
1) 과도의 고온	(E 900)
2) 고기압, 저기압 및 기압의 변화	(E 902)
3) 여행 및 운동	(E 903)
4) 굶주림, 갈증, 불량환경노출 및 방치중의 굶주림, 갈증	(E 904)
13. 기타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E 916~E 928
1) 과로 및 격렬한 운동	(E 927)
14. 침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E 910~E 915
1)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삼킴장애 또는 정신신경 장애상태가	

- 있는 사람의 음식물흡입 또는 삼킴에 의한 막힘 및 질식
2)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삼킴에 의한 막힘 및 질식
15.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1) 질병의 진단 목적
2) 질병의 치료 목적
16.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17. 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8.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19.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20.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E 912)
E 870~E 876

E 960~E 969
E 970~E 978
E 990~E 999

(별표 3)

대상이 되는 불의의 교통사고

1.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 통행중 전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전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 이타 및 에스카레이타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윌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4. 제 1호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 4)

장애등급분류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 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 3급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 3급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 3 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았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한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 5 급	1.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1.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한손가락 또는 두손가락을 잃었을 때 8.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 해 등 급 분 류 해 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애"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口, 바, 포), 치설음(치, 디, 리), 구개음(스, 츠), 후두음(오, 흥) 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헤르츠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귀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애"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코뼈의 1/2 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팔목·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발목)의 완전장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

- 다.
11.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가 완전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손가락의 장애”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발가락의 장애”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절골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발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1, 2, 3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재해입원특약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재해입원특약을 선택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목 차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32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32
제 3 조	【보험금 지급사유】	32
제 4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32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3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33
제 7 조	【보험료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33
제 8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33
제 9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33
제 10 조	【보험금등의 지급】	33
제 11 조	【특약내용의 변경】	34
제 12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34
제 13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34

이 특약의 약관은 본인형, 부부형, 가족형중 본인형(개인계약의 경우) 또는 부부형(부부계약의 경우) 약관 내용만을 적용합니다.